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요약서)**

2020. 0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어 서민과 중산층 주거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을 통해 장기간 거주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방침에 따라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아산시 장기미집행공원(배방, 공수근린공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現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現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본 사업 실시근거	본 계획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련 법률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명시된 바, 동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함	

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01.16., 시행 2018.07.17.)에 의거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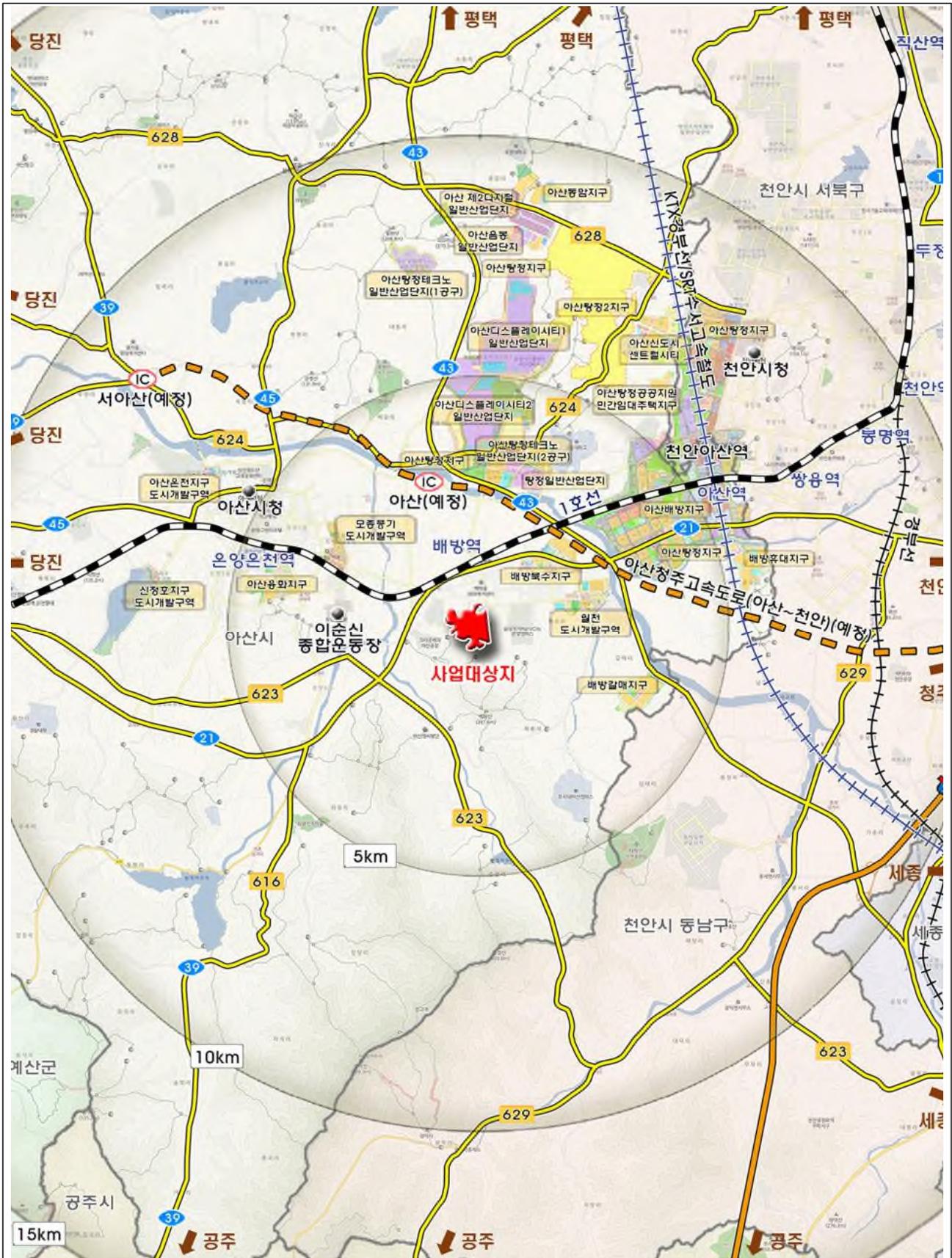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아산배방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국토교통부)
- 2019.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19. 12. 26 ~ 2020. 01.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0. 03. 06 ~ 03.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5일)
- 2020.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0. 04. ~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020.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협의요청)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계 획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79번지 일원
- 계 획 내 용 : 524,417m²
- 계 획 인 구 : 7,381인 (3,355세대)
-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6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 1) 계획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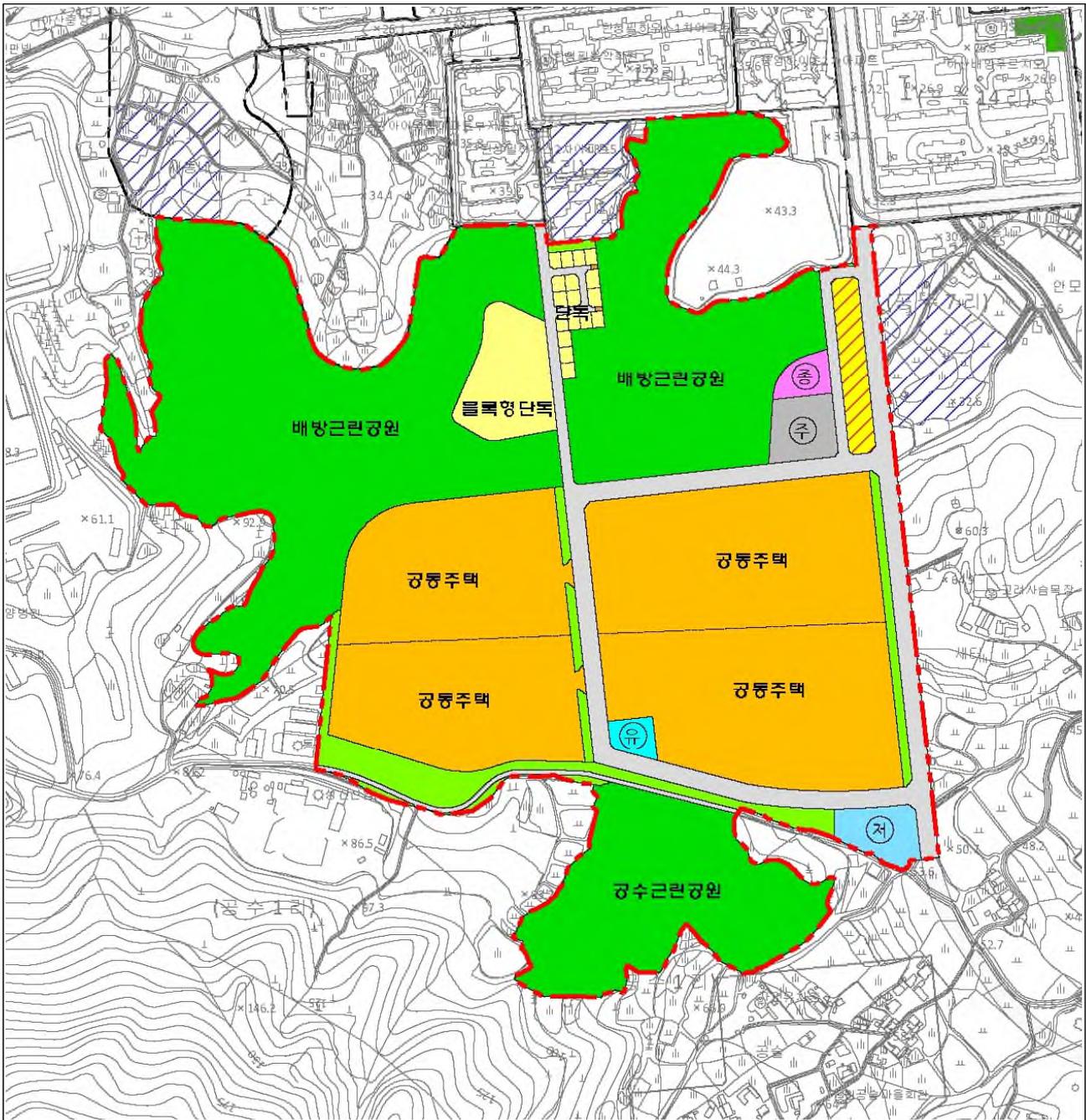
1.5 계획지구 결정사유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①	1호 근린공원(배방공원) 도시계획시설 경계	②	지형·지적 경계(정형화)
③	현황도로 경계(포함)	④	2호 근린공원(공수공원) 도시계획시설 경계
⑤	현황도로 경계(미포함)	⑥	중로1-6호선 도시계획시설 경계(포함)
⑦	모산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경계(미포함)		



(그림 - 2) 계획지구 위치도

1.6 토지이용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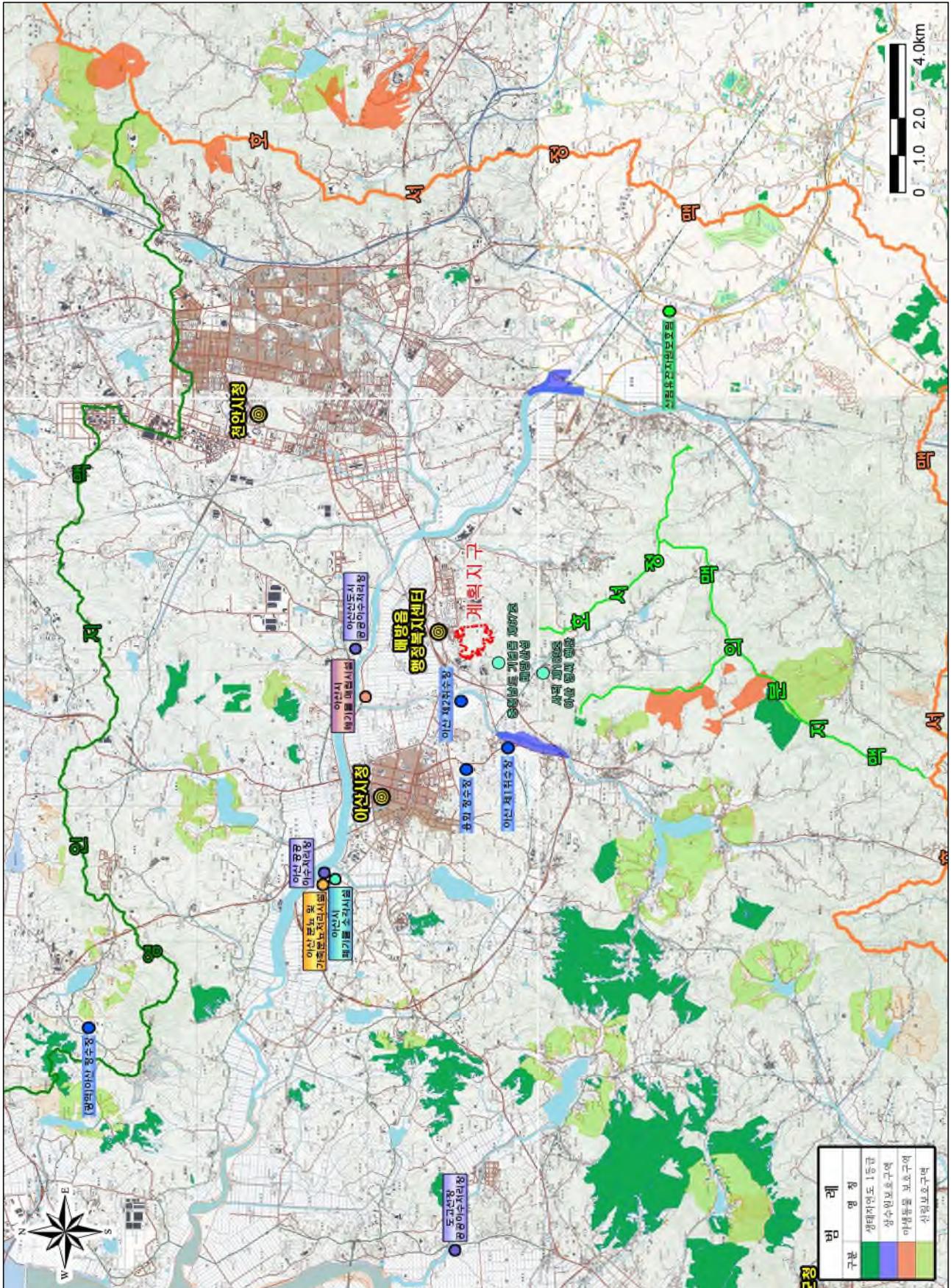


범례							
	지구계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원		녹지		유치원		주차장
	종교시설		저류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 본 절차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단계로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할 계획임

제2장 지역개황

구 분		관련법	아산시	계획지구	비 고
대기 환경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4월 이후 해당
	약취관리지역	약취방지법	×	×	○ 해당사항 없음
	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대기환경보전법	○	○	○ 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 ○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수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	×	○ 해당사항 없음 ○ 계획지구 인근 1개소 약 2.2km 이격 (계획지구 상류에 위치)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해당사항 없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물환경보전법	○	○	○ "가"지역에 해당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물환경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삼교천 (곡교A)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	×	○ 해당사항 없음
연안오염총량 관리지역	해양환경관리법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 환경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	○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특별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2개소 ○ 계획지구 인근 약 4.9km 이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습지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및 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	○ "호서정맥의 분지맥" 약 1.2km 이격
기타	자연경관영향심의대상	자연환경보전법	-	×	○ 해당사항 없음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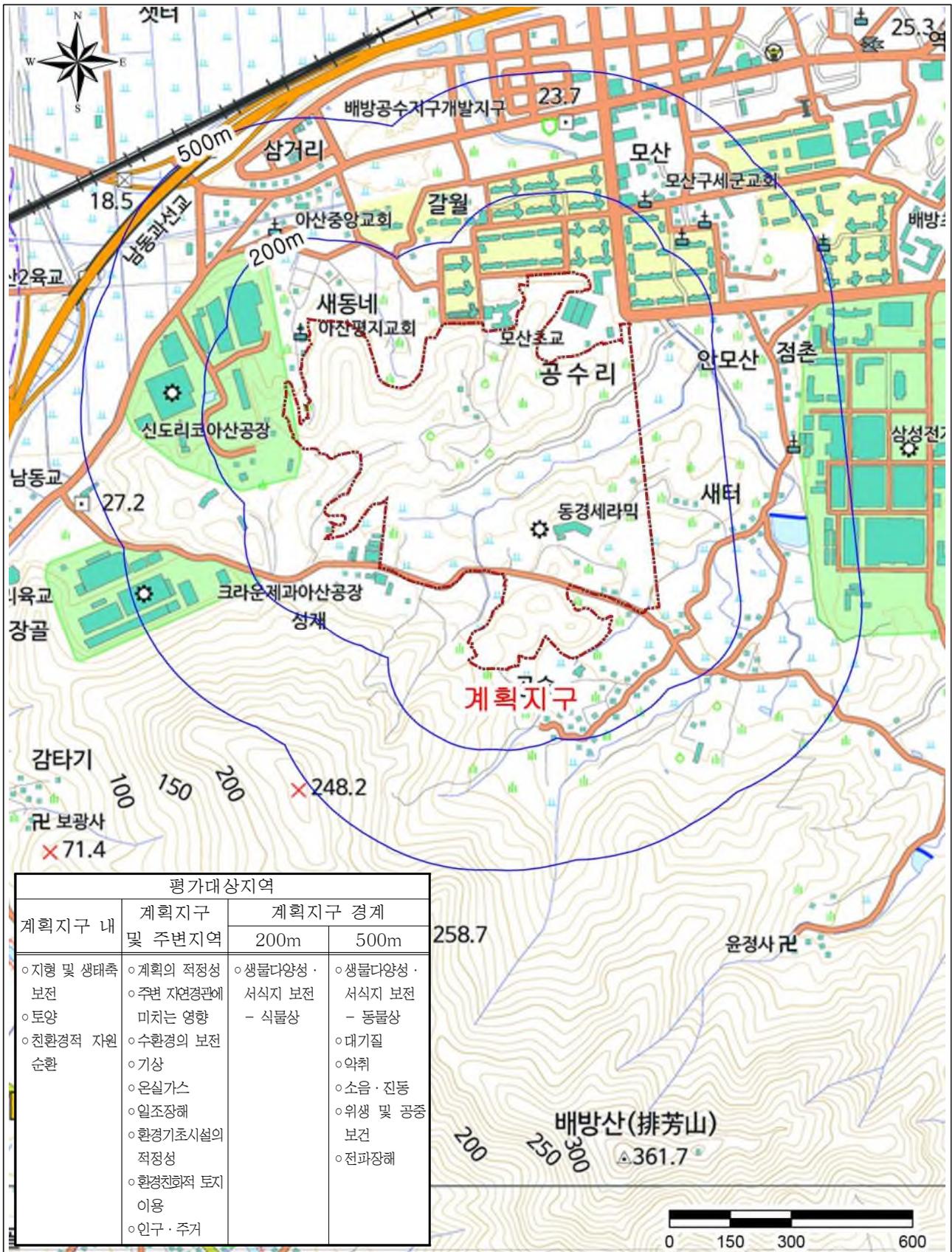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 2>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 지 의 타 당 성	자 연 환 경 의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계획 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면사업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정지 및 토공계획 등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지역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보 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통경축 확보, 기존 경관과의 조화,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갈동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표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난방연료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영향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현황조사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악취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산업시설 등의 악취발생 요인을 조사 ○운영시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지역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지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공공주택지구 운영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수립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현황 파악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위생· 공중보건	○운영시 계획지구 주변 공장이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운영시
			전파장애	○운영시 변전소(이격거리 500m)가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운영시
	일조장애		○공공주택 등 신축 건물 입지에 따라 일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그림 - 3)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4장 대안의 검토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 1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계획의 경우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과 경계를 조정하는 “입지”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 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적용여부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2018.12.12.)

4.2 대안별 비교·분석

4.2.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검토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 4> 계획비교(Action, NO Action)·분석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시(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활용·배치를 통해 공원과 주거용지가 어우러지는 친환경단지 조성 및 도시숲 공간 제공 ○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담당하여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조성 가능 ○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대료로 관리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확대하여 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 계획시행에 따른 부분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항목별 저감대책(안) 수립을 통한 영향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배방, 공수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사업 미시행으로 추가적인 환경영향은 발생치 않아 현재 상태의 환경기준 유지에 문제 없음

<표 계속>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시(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 공원 및 녹지계획으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으로 지형 훼손 최소화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	○ 생활환경의 변화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비교·검토결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대안 1을 선정함	
선정(안)	◎	

4.2.2 수요·공급에 대한 비교·분석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 5> 토지이용구상(안)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 (m²)</th> <th>구성비 (%)</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24,417</td> <td>100.0</td> <td></td> </tr> <tr> <td>주거용지</td> <td>199,080</td> <td>37.8</td> <td>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td> </tr> <tr> <td rowspan="3">기반 시설 녹지</td> <td>소계</td> <td>325,337</td> <td>62.2</td> </tr> <tr> <td>공원</td> <td>245,168</td> <td>46.8</td> </tr> <tr> <td>녹지</td> <td>21,533</td> <td>4.1</td> </tr> <tr> <td>용지</td> <td>기타</td> <td>58,636</td> <td>11.3</td> <td>유치원, 주차장, 종교시설, 저류지, 도로</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524,417	100.0		주거용지	199,080	37.8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반 시설 녹지	소계	325,337	62.2	공원	245,168	46.8	녹지	21,533	4.1	용지	기타	58,636	11.3	유치원, 주차장, 종교시설, 저류지, 도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 (m²)</th> <th>구성비 (%)</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00,322</td> <td>100.0</td> <td></td> </tr> <tr> <td>주거용지</td> <td>188,199</td> <td>37.6</td> <td>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td> </tr> <tr> <td rowspan="3">기반 시설 녹지</td> <td>소계</td> <td>312,123</td> <td>62.4</td> </tr> <tr> <td>공원</td> <td>242,281</td> <td>48.4</td> </tr> <tr> <td>녹지</td> <td>10,318</td> <td>2.1</td> </tr> <tr> <td>용지</td> <td>기타</td> <td>59,524</td> <td>11.9</td> <td>유치원,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저류지, 도로</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500,322	100.0		주거용지	188,199	37.6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반 시설 녹지	소계	312,123	62.4	공원	242,281	48.4	녹지	10,318	2.1	용지	기타	59,524	11.9	유치원,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저류지, 도로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524,417	100.0																																																						
주거용지	199,080	37.8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반 시설 녹지	소계	325,337	62.2																																																					
	공원	245,168	46.8																																																					
	녹지	21,533	4.1																																																					
용지	기타	58,636	11.3	유치원, 주차장, 종교시설, 저류지, 도로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500,322	100.0																																																						
주거용지	188,199	37.6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반 시설 녹지	소계	312,123	62.4																																																					
	공원	242,281	48.4																																																					
	녹지	10,318	2.1																																																					
용지	기타	59,524	11.9	유치원,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저류지, 도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북측부 모산초등학교 통학을 고려한 도로 계획 ○ 근린공원 경계부 자연지형을 활용한 주거용지 배치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계획지구 남측 지구 내 도로 및 현황 연결 도로 분산이용으로 거주민 안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의 주차장 마련으로 방문객 및 입주자의 주차장 분산 이용 편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지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 불편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남측 지구 내 도로 및 현황 연결도로 (레미콘차량 등 이용) 공동 사용으로 거주민 안전 우려 																																																						
비교·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며, 주변의 기개발된 주거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 창출 및 주변 시설과의 교류·소통기능 제공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이 가능한 대안 1을 선정함 																																																							
선정(안)	◎																																																							

4.2.3 입지대안 비교·분석

- 입지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계획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 6> 입지의 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지구계 결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방공원 및 근린공원 연접지역 한정 ○ 총면적 : 524,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개발가능지 최대 확보 ○ 총면적 : 622,932㎡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활용 배치를 통해 공원과 공동주택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단지 조성 및 도시숲 공간 제공 ○ 주택 등 지장물 최소화로 보상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면적 비율이 높아 개발가능지 부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가 접해있어 공장시설 인접으로 인한 주거환경 관련 민원발생 우려 ○ 비교적 농지로서 보전이 잘 되어 있으며, 1안에 비해 개발 시 더 큰 환경영향이 우려
비교·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용지 부족으로 주택 공급측면에서는 대안2가 유리하나, 산업 시설(삼성전자) 인접으로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대안1이 상대적으로 산림훼손이 적어 대안1을 선정함 	
선정(안)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지질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 계획지구의 남측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표고가 높으며, 북측 및 동측으로 내려올수록 표고가 낮아지는 지형 - 지질 : 계획지구는 대부분 선캠브리아기 호상흑운모편마암층(97.5%)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층적층이 분포 ○ 표고 및 경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 최고표고 97.5m, 최저표고 35m, 평균표고는 64.6m - 경사 : 전체면적의 44.0%가 경사도 10° 미만, 평균경사는 12.3°로 분석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지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남측으로 약 1.2km 이격하여 호서정맥의 분지맥이 위치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남측으로 약 1.2km 이격하여 배방산 정상외 토르, 급애 등이 위치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변화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토공량 계획 : 부지정지로 인한 토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해 토사가 주변 농수로 및 하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생태축 영향 : 계획지구를 통과하는 능선축은 없어 생태적 연속성 단절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안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구배 적용 : 발생하는 절·성토사면에 대해서는 사면 경사 기준에 의거 사면의 안정에 필요한 적절한 사면경사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를 방지할 계획 - 사면보호공법 : 식생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질, 사면안정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공법을 선정할 계획 ○ 토공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공사 현장과의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 ○ 토사유출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비닐 및 가마니 덮개 등 활용 - 우기시에는 토공사를 되도록 피하여 건기에 실시 ○ 생태축 보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산림지역(성터산 및 배방산)과 연결한 계획지구 경계부 일대 및 계획지구에 편입되는 일부 임연부를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단절을 최소화하겠음 - 공사시 산림이 양호한 배방, 공수근린공원은 최대한 보전형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부 경관 : 계획지구 동측으로 농촌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북측 및 서측으로 배방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공수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산림녹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계획지구 외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방근린공원에서 성터산, 배방산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 경관이 계획지구 북측에서 서측을 걸쳐 남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계획지구 동측으로는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계획지구 북측으로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인공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1]」에 제시된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보호지역 외 지역”에 해당되나,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해당하므로 계획지구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망점 경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에 대한 자연경관 유형별 검토결과,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등에 따른 인근 조망점에서 경관 변화가 예상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배방근린공원, 공수근린공원) 간의 분지형 평탄지를 이용한 자연 순응형 단지 조성 ○공동주택용지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관내 주택수요·공급 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및 다양한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공동주택용지는 계획지구 내 기 훼손된 평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종류 및 규모 등은 인근 타 개발사업의 주택공급량,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계획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환 경 현 황

- 수계현황
 - 계획지구 서측 산지에서 발원하여 계획지구 내를 관통하는 수계는 농수로 및 구거등을 통해 갈동천(소하천)으로 유하하며, 곡교천(지방), 곡교천(국가), 삼교천(국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해로 방류됨
- 취·정수장 현황
 - 아산시에는 취수장 2개소 및 정수장 3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상·하수도 보급현황
 - 아산시 상수도 현황 조사결과, 전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상수도 보급률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수도 현황 조사결과,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은 84.5%로 조사됨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아산시는 총 2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중에 있음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아산시는 분뇨처리시설은 1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계획지구가 위치한 아산시에는 1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획지구 경계에 서 서측으로 약 2.2k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계획지구 상류에 위치)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 본 계획지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수변구역 현황
 - 본 계획지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가”지역에 해당됨
- 지하수보전구역
 - 계획지구 지하수보전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 계획지구는 “곡교A” 단위유역에 포함됨
- 수질 현황
 - 지표수질 조사결과, 생활환경기준(BOD 기준) II(약간좋음)~VI(매우나쁨)등급의 하천수질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하수질 조사결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기준(농·어업용수, 생활용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환경의 보전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 - 공사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급수량 3,520m³/일 - 오수발생량 3,069m³/일 - 비점오염원 발생 및 재해(하천, 호우, 토사) 영향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 저감방안 : 배수계획(가배수로, 비닐덮개 등) 수립, 침사지 설치 등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저감방안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 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공급계획 : 배방배수지 → 계획지구 - 하수처리계획 : 계획지구는 배방1처리분구에 해당되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계획함 -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 본 계획 시행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점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할 계획임

5.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환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개황 - 천안기상대 : 평균기온 12.3°C, 강수량 1,185.5mm, 상대습도 68.2%, 평균 풍속 1.9m/s - 송악AWS : 평균기온 12.4°C, 강수량 922.3mm

■ 대기질	
환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총 620개소 ○ 대기질 자동측정망(배방읍 측정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10 27~67μg/m³, PM-2.5 12~44μg/m³, NO₂ 0.007~0.024ppm, SO₂ 0.003~0.004ppm, CO 0.3~0.5ppm, O₃ 0.027~0.051ppm ○ 문헌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10 28.0μg/m³, NO₂ 0.020ppm로 국가 대기환경기준 만족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 실시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대기질 영향이 예상됨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 공사지역 및 주변지역 살수 - 자동식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가설 방진시설 설치 - 건설장비 적정 관리 및 질소화합물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공간(공원·녹지) 확보 및 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

■ 약취	
환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 배출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시설(북측 약 2.7km) 및 아산시 폐기물 매립시설(북서측 약 2.8km) 위치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취 현황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6개 지점의 약취 현황조사 결과, 희석배수 3~4배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약취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으로 인한 약취물질 배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계획지구 주변 산업시설의 약취물질 배출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음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연료(LNG) 공급 - 녹지공간(공원·녹지) 조성 - 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

▣ 토양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내 특이할 만한 토양오염원 분포는 없으며, 현장조사 결과 매립시설 및 불법 매립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S-1지점의 니켈(Ni)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하며, 니켈(Ni) 항목 외 전 항목은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이 유발될 수 있음 - 공사장비 운용시 폐유발생 될 것으로 예측 - 작업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 공사시 절·성토에 의한 토사가 우기시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무단 방치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우려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철거 시 정화조 폐액, 제조공장의 폐유보관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업자를 통해 전량 수거처리 - 이동성이 있는 장비는 외부 정비업소 이용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 내 폐유 보관시설 설치 → 폐유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폐유 보관시설 설치 시 관련법에 의거 적정시설의 보관시설을 설치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처리 - 분뇨 : 현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를 수거·처리 - 공사시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토양침식 방지를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 - 공사시 예측치 못한 추가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토양오염실측조사 실시, 기준 초과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정화 대책 수립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적정 처리하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 배출 폐기물은 전문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소음·진동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현황(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 주간 61.5dB(A), 야간 47.0dB(A)로 조사되어 소음환경기준 만족 - 진동 : 주간 25.1dB(V), 야간 17.7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부의 특별한 소음·진동 발생원은 없으나, 인근 공장에 의한 공장소음 및 북측 배방지구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이 주요 소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영향예측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 총 13개소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인근에 분포하는 시설물중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예측은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아파트, 취락지 등의 주거지역(단독가옥 포함) 등 1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예측대상에서 제외 - 계획지구 내 주택건설용지를 운영시 영향예측지점으로 선정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영향권은 주거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지구로부터 반경 약 90m, 280m 이내로 예측됨 · 영향예측지점 10개소 중 9개소가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동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세부 단지내 교통분석을 통한 교통량에 의거 주거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한 소음예측을 실시하겠음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방음판넬 설치방안 검토 - 작업시간 조절, 지형을 고려한 공사시 계획 수립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정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취수장 2개소, 정수장 3개소 ○ 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1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4개소(시설용량 500m³/일 이상) ○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매립시설 1개소, 소각시설 3개소, 기타시설 49개소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용수수요량 : 3,520m³/일 ○ 운영시 오·폐수발생량 : 3,069m³/일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 542.79km², 인구 330,242인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3kg/인·일, 1인당 1일 분뇨 발생량 0.46L/인·일 - 아산시 지정폐기물 : 2018년 193,821.8톤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시설 : 아산시에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자체 1개소, 사업장 2개소로 총 3개소가 위치 - 매립시설 : 아산시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자체 1개소 위치 - 기타시설 : 아산시에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은 자가처리 20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 아산시는 분뇨처리시설은 1개소가 위치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분뇨, 임목폐기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인구로 인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및 에너지 사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발생 :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할 것임, - 지정폐기물 발생 : 폐유, PCB 등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작업장의 일정한 곳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설치하고,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한 후 관할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분뇨 처리계획 : 분뇨는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 주변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임 - 임목폐기물 발생 : 계획지구 내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 중 양호한 수목은 조경수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이식)을 검토할 계획이며, 그 외 재활용이 불가능한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수거 및 운반, 보관 계획 및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온실가스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원 및 우리나라 배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2017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09.1백만tonCO₂eq(LULUCF 제외)로 에너지(86.8%)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온실가스 관련 법령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0호, 2019.12.3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단위 적용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됨 - 수목 훼손에 의한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감소가 예상됨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사용 및 오·폐수 발생, 교통량 증가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됨 - 계획지구 내 녹지 조성 및 수목 이식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변화가 예상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건설기계 및 자재의 사용 - 자재 등 운반차량의 운행관리 및 건설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 저탄소 자재 사용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검토 - 녹지 조성, 조경식재 시 환경정화수종을 선정, 식재를 검토 - 식재계획 수립 시,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검토 -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여 다층적 식재구조가 되도록 검토

라.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p>환 경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542.6km² 중 임야 209.0km²(38.5%), 전, 답 등 농경지 181.9km²(33.5%) - 계획지구 : 임야 357,881m²(68.2%), 전, 답 등 농경지 130,497m²(24.9%)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도시지역 50.2km²(9.3%), 비 도시지역 농림지역 239.8km²(44.2%) - 계획지구 :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보존녹지 308,389m²(58.8%), 자연녹지 216,028m²(41.2%)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 사유지 509,471m²(97.1%) 국·공유지 14,765m²(2.8%) 및 기타(구적 오차) ○지장물 현황 : 가옥(2동), 상가(1동), 공장(1동)와 분묘가 88기 등이 입지 ○지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 최고표고 97.5m, 최저표고 65m로 표고차가 64.6m - 경사 : 최고경사 39.7°, 평균경사 12.3°, 20°이상 급경사지 17.3% ○계획지구 입지여건 현황 및 주변개발 현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입지여건 : 계획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보존녹지지역(58.8%), 자연녹지지역(41.2%)에 해당되며,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분포하지 않고, 2등급지역이 47.5%, 3등급 지역이 52.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변개발 현황 및 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공사 준공 및 사업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8개 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3개소가 추진중임
<p>영 향 예 측 및 저 감 방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경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형·지세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용지, 기반시설용지를 공간적으로 구분 - 주택건설용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 - 계획지구 내 거주민 및 기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주진입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계획함으로써 업무·서비스시설 입지 유도 - 배방근린공원, 공수근린공원으로 위요된 친환경주거단지 계획 - 지구 내 거주민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 배방근린공원 내 경작지에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계획하여 다양한 유형의 토지공급을 통한 수요자 필요 충족 - 계획지구 남측 공장부지와 연결되는 기존 현황도로를 주거단지 내 집산도로와 분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p>영 향 예 측 및 저 감 방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 88.5% - 목표 생태면적률 : 55.8% - 향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조경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 시 자연 지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간유형별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보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	--

▣ 위생·공중보건

<p>환 경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기준 아산시의 총 인구는 327,657명, 세대 당 인구수는 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 ○ 2017년 기준 아산시의 환경취약계층은 아동 55,127명, 고령자 36,969명으로 조사 ○ 2017년 기준 의료시설은 총 295개소, 병상수는 총 3,512개로 조사 ○ 2017년 기준 법정 전염병은 총 1,595건(사망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p>영 향 예 측 및 저 감 방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건강영향평가 대상 비발암성 및 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의 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예측하지 못한 영향의 발생을 고려하여 향후 계획지구 내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시, 건강영향평가 항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전파장해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장해 유발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kV의 송전선로가 계획지구 남측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계획지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계획지구 남측 경계 및 공수공원의 남측 일부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위치함 ○전자계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전자계 기준은 국제기준 중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일반인 권고 기준인 833mG를 잠정 적용하고 있음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파 노출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5)」에서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정한 자계 기준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인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kV 변전소 자기장 측정결과, 100m 이상 이격시 전자계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됨 ○송전선로에 의한 자계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kV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최대 노출량이 22mG로 기준인 833mG 이내로 나타남 -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은 송전선로에서 최소 55.9m 이격되어 노출량은 3mG 이하로 검토되어, 전자파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민원 발생시, 관련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해당 민원을 해소토록 할 계획임

▣ 일조장해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기상대의 10년간 기상개황 조사결과, 연간 총 일조시간은 2,251.10시간으로 조사됨
영 향 예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장해 수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지일 기준 ·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 연속 2시간 이상 확보 ·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 총 4시간 이상 확보 ○일조장해 유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건설용지에서 일조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 ○일조장해 영향 예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북동측에 인접하여 모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고층건물(공동주택)에 의한 일조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시, 고층 건축물에 의한 일조영향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건축물 세부 설계 시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일조권 분쟁 및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인구·주거	
환 경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및 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의 전체인구는 327,657명(129,188세대)이며,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배방읍의 경우 전체인구 68,050명(26,086세대)로 조사됨 ○인구증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감 현황 조사결과, 자연적 증감은 출생이 사망인원 보다 앞서며, 사회적 증감은 전입이 전출 보다 앞서 증가 추이로 조사됨 ○인구구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성 현황 조사결과, 20~59세의 인구분포가 전체인구의 5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구수,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수는 2017년 기준 118,095가구이며, 주택수는 총 124,094호, 주택보급율은 105.08%로 조사 ○계획지구 인근 개발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 8개소 - 산업단지 : 산업단지 3개소
영 향 예 측 및 저 감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인부투입으로 인한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동안의 한정된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변화로 대단위 인구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택지 및 주택수요-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인구 산정결과, 총 7,381인 (3,355세대)이 계획지구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